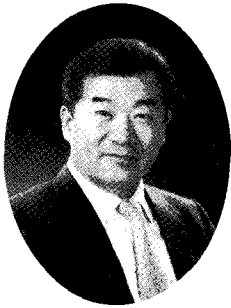


최근 독일의 경쟁정책 운용 동향

- 특히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이 기 수
고려대 법대 교수

독일 경쟁제한금지법(GWB) 제6차 개정법률이 '98년 5월 7일 독일연방의회, '98년 5월 29일 독일연방상원을 통과하여 '98년 8월 26일 공시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건설도급공사, 물품·서비스 공급에 관한 개정법률이 5월 29일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을 통과 GWB의 제4장에 편입되어 新法 제97조 내지 제129조에 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개정 이후의 체계 및 개정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

I. 체계

독일연방정부가 자국법을 유럽법과 동화시킴과 동시에 경쟁원칙을 강화하고자 개정한 이번 신법은 체계가 잘 되어 있다.

GWB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경쟁제한'에 관한 실체규정인 제1장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법문내용이 분명해지고 일목요연해졌다. 수평카르텔

(법 제1조~제13조)과 수직카르텔(법 제14조~제18조)에서 시작되어 일방적인 행동양태(제19조~제23조)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연이어 경쟁규정(제24조~제27조)을 두고 있다. 舊法 제99조 아래에 규정되었던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은 농업(제28조), 금융·보험업(제29조), 저작권평가회사(제30조)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바뀌었고, 스포츠(제31조)에 관한 규정이 보충되었다. 행정법상·민사법상의 제재에 관한 몇 개의 규정이 법 제32조~제34조에 규율되어 있으며, 이는 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벌과금규정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법 제44조~제47조에서 독점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카르텔법(제48조~제53조)과 절차(제54조~제96조)에 관한 법률규정은 舊法과 대부분이 일치하나, 다만 과징금규정 영역은 조금 현대화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정부조달법의 개정은 정부의 청약에 관한 규정(제97조~제129조)이 GWB에 편입되었고,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적용범위(제130조) 및 경과규정과 종결규정(제131조)이 있다.

II. 수평카르텔과 수직카르텔

독일법은 수평적 경쟁제한과 수직적 경쟁제한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법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역 내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수직적 경쟁제한을 통한 지역분할은 국경간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

독일연방정부가 자국법을 유럽법과 동화시킴과 동시에 경쟁원칙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경쟁제한금지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경쟁제한에 관한 실제규정인 제1장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법문내용이 명확해지고 일목요연해졌다.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쟁제한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¹⁾

1) 수평카르텔의 원칙적인 금지

GWB 제1조는 舊法과 같이 수평카르텔을 금지하는 근본규칙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내용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민법상의 표현을 포기하고 유럽공동체조약(EGV) 제85조제1항과 같이 분명한 카르텔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금지의 민법상의 효과는 동법 제1조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관한 독일 민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나온다. ‘공동목적’(gemeinsamer Zweck)이라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구별개념을 포기하고 그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합의’(Vereinbarungen zwischen miteinander im Wettbewerb stehenden Unternehmen)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이 의미는 실제의 경쟁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공동목적’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합의’로 바꾼 것은 판례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압력주물(壓力鑄物)”판결(WuW/E BGH 3115), “혈액형검사카드”판결(WuW/E BGH 3121), “염천공급(鹽泉供給)”판결(WuW/E BGH 3137) 및 “기업구속계약”판결(BGH, Urt. v. 12.5.1998, ZIP 1998, 1159)에서 구법 제1조와 제18조의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

을 알게 되었다. 이들 판결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법 제1조와 제18조는 상호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제한다. ② 양자의 결정적인 구별기준은 “공동목적”이어서 그것이 존재하면 전적으로 구법 제1조가 적용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법 제18조만이 적용된다. ③ “공동목적”이라는 기준은 GWB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이 필요하다. ④ 그 해석은 과거의 판례처럼 “같은 방향의 이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구법 제1조의 의미에서의 공동의 목적은 경쟁제한을 위하여 경쟁자유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 교환계약에서도 존재한다.

신법 제1조의 ‘상호합의한 행위 유형’(aufeinander abgestimmten Verhaltensweisen)으로의 독단적인 통합은 구법 제25조제1항과 유럽공동체조약 제85조제1항과는 달리 수직으로 합의한 행위유형은 더이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독일 카르텔법에서의 전형적인 추정개념의 유지와 관련하여 보면 실제상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구성요건 표지는 교환계약(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제1이 계약)에서의 경쟁제한과의 한계설정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게 된다. 신법 제16조(구법 제18조)에 귀속되는 다수의 교환계약은 최소한의 잠재적인 교환계약에서의 경쟁제한에 어떤 인정해야 할 이익이 있을 때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성요건 제재에 근거하거나 고유이론(Immanenztheorie)에 근거하여 해

1) 독일의 경쟁제한방지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1998.12. 284면

개정 경쟁제한금지법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점은
구법 제34조(카르텔계약과 카르텔협정의 형식)를 삭제했다는 점

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아니되고, 구법에서의 '공동목적', 신법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이라는 일정한 구성요건표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신법 제1조에서는 시장관계의 영향력, 즉 카르텔의 외부효과에 관한 규정은 더이상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법으로 질적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유럽공동체조약 제85조제1항에서와 같이 계속 제1조의 해석에 앞으로도 잠재력과 관련하여 시장관계의 외부효과 혹은 영향력의 구성요건표지는 특별히 필요하게 된다.

2) 수직카르텔

수직카르텔의 분야에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 모두가 구법 그대로이다. 독일 입법가는 유럽공동체조약 제85조제1항에서 수평카르텔은 물론 수직카르텔을 동시에 규율하고 있는 EC법체계를 수용하지 않았다. 독일법에 의하여 경영·독점구속이 유효하고 신법 제16조에 의해 오직 카르텔형의 남용감독에만 해당되는데, 만일 이 사항이 유럽공동체조약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되고 제85조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제3항의 전제조건 아래에서만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3) 서면형식 필요성 및 중재계약 한정의 삭제

개정법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점은 구법 제34조(카르텔계약과 카르텔협정의 형식)를 삭제했다

는 점이다. 구법 제34조는 법원이 동의하고 있던 확장해석과 관련하여 카르텔청의 작업을 위하여 카르텔법상의 협조기능을 완전히 삭감하였다. 이 조문은 카르텔청의 작업을 쉽게 하는 데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고,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당사자에게 카르텔법상의 중립적인 계약의 구성부분에 대한 불완전한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데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교재대구속을 고수하고자 하는 측에서의 법 제34조를 삭제하고자 함에 항상 반대하던 생각은 출판물에는 가격구속(재판매가격의 구속)을 허용하고 있는 법 제16조에서 예견되고 있는데도, 서류형태의 가격구속합의는 '가격과 가격부분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고려되었다. 구법 제34조가 삭제됨으로써 합의가 총체적으로 서류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더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즉, 가격합의에 관한 규율은 서류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구법 제31조는 아무런 반응 없이 삭제되었다. 구법 제91조는 '만일 개별사항의 법률분쟁에 대한 중재법원의 결정 없이 보통법원을 통한 결정요구권이 모든 참가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카르텔계약에 관련된 법률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은 무효이다. 이 규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 즉 카르텔에 관한 분쟁을 일반법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법 제91조제1항에서 예견하고 있는 중재관할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만일 타방당사자가 주된 사안으로 중재법원 관할사항으로 취급하였다면 카르텔법 문제에 관한 중재절차는 유효하게 처리되었을 수도 있었기

시장지배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문안을 보면
 앞으로도 일정한 시장점유 상태에서 과점적 시장지배를
 진정한 의미의 거증책임의 전환을 추정할 수 있도록 남용감사회에 그 권한을 부여

때문이다.

III. 시장지배적 지위

1) 개념

시장지배력은 실질적인 합병통제 및 남용감독의 중심개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신법 제19조 제2항제1문, 제2문에서 구법 제22조제1항,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점적 시장지배에서와 같이 절대적인 시장지위에 근거하거나 본질적으로 경쟁의 결여에 근거하여 개개의 시장지배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우선 신법 제19조제3항제1호는 신법과 같이 이해되도록 하는 의미이다. 제2호에서는 지금까지의 제23조제2항과 같이 과점시장지배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문안을 보면 앞으로도 역시 일정한 시장점유상태에서 과점적 시장지배를 진정한 의미의 거증책임의 전환을 추정할 수 있도록 남용감사회에 그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조건이 본질적인 경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기업 전체로 보아 기타의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전혀 우월적인 시장지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남용금지

남용금지(신법 제19조제1항)는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금지로 변형됨으로써 근본적으로 그 규제가 강화되었다. 개정법에 의하여 남용은 그 자체

가 금지되었으며, 이제는 미래에 효력을 미치는 행정법상의 남용감독의 근거 이상이 되게 되었다. 신법 제19조제4항의 남용의 첫 3 사안은 구법 제22조제4항과 같으나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자로서 시간관계 없이 전후 생겨하는 하나의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이 필요한 넷츠(Netz:선로망)나 필수기반시설(생산요소) 구조조정을 위한 남용적인 참입거절을 보충하고 있다(신법 제19조제4항제4호). 기본시설이론(Essential Facility-Doctrine)[필수기반시설(생산요소) 강제 제공의 원칙]을 법률상의 형상으로 처음 구성한 이 조문은 경쟁정책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넷츠’, ‘필수기반시설’ 혹은 ‘사전에 혹은 사후에 조성된 시장에의 활동 가능성’과 같은 구성요건표지는 신법 제19조제4항제4호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해석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공동사용을 요구하는 자는 원칙으로 구성요건의 전제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본시설이론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사례, 특히 에너지경제나 전자통신업계에서는 신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별법상의 특수규정이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이 얼마만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질문에 특히 적용된다.

3) 차별화

정치적으로 특별한 무게를 갖는 규정은 구법 제26조제4항제1문과 일치하는 신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차별화 구성요건의 보충이다. 제2문은

“시기적으로 시간간격이 많지 아니한” 청약은 항상 동일한 물건이나 급부에만 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다양한 물건이나 양적인 최소규준은 구체적인 경쟁효과를 갖는 오랜 기간동안 효과를 갖는 정책의 개개규준을 포섭함으로써만이 충족될 수 있다.

제1문의 의미에서의 부당한 방해를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방해란 “기업이 물건이나 급부를 오직 간헐적인 일상가격 아래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안에서 보아 정당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의 개정으로 판매가 “체계적으로 경쟁에 돌입하였거나” 그 빈번성으로 보거나 그 장소에 있어서 “효과적인 경쟁의 구조적인 전제조건 위협”을 근거지움에 합치되는 인상가격 아래로 판매될 때에만 범위반이라고 한 독일연방대법원판결(BGHZ 29, 203)은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상가격 아래로의 청약이 “오직 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즉, 청약자는 오직 “때때로만의 청약이 아닌 것”이 사안에서 보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일련의 해석문제가 생겨난다. 우선 즉, 개개의 사례에서의 가격청약을 포함하는 ‘청약’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제2호는 영업상의 확장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판매사례의 일정한 다수와 관련되는 청약에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약은 오직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상가격 아래로”라는 개념은 입법사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판매가격은 구입가격보다 고가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고에 알맞은 상기업을 생각하고서 정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제2호를 일반화시켜서 비상인기업에 적용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 “자기비용으로의 판매”로서 해석되어서는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왜 상기업에 있어 오직 구입가격만이 문제이고, 추가적

인 자기비용은 문제되지 아니하는지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얻게 되는 예로는 “시기적으로 시간간격이 많지 아니한” 청약은 항상 동일한 물건이나 급부에만 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다양한 물건이나 양적인 최소규준은 구체적인 경쟁효과를 갖는 오랜 기간동안 효과를 갖는 정책의 개개규준을 포섭함으로써만이 충족될 수 있다.

IV. 합병에 대한 통제(Merger Control)

1) 실질적인 합병통제

실질적인 합병통제는 구법 제24조제1항 대신에 신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제하고 있다. 위원회 초안과 정부초안에서는 참여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경쟁조건이 더 양호해지고 또한 이러한 조건의 양호함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단점보다 월등하다고 증명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적용제외조항은 삭제되도록 예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안의 근거도 잘못되었는데, 이는 이 적용제외조항에 따라야만이 오직 정당성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본 조항을 삭제하면 연방카르텔청이 판단할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 또한 적용제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자유처분의 조건과 부담을 미래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적용제외조항은 결국 농업분야의 조제기업이나 시장기업 합병에 있어서의 특수한 적용제의 필요성 때문에 잔존하게 되었지만, 이 영역에만 한정될

적용제외조항을 존속시킴으로 연방카르텔청이 특수영역에 이어 중요한 적용제외 실무를 계속시키는 근본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잘 된 법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수만은 없다. 적용제외조항을 존속시킴으로 연방 카르텔청이 특수영역에 이어 중요한 적용제외 실무를 계속시키는 근본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잘 된 법개정이라고 생각한다.

통제하고 있다면 미래에 A가 B의 40%를 인수할 때 합병통제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는 구법과 다르다.

2) 형식상의 합병통제

형식상의 합병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다. 신법 제37조는 합병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1항제2호는 특별합병구성요건으로서의 통제권 취득을 규율하고 있다. 통제권 취득과 함께 규정된 것은 특히 25%나 50%(다수 참가보다 많지 않게)의 참가로의 합병구성요건 및 경쟁적으로 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속이다(구법 제23조제2항제6호=신법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제1항제4호의 계산법은 절차법상으로 완전히 다른 합병구성요건과 일치시켰고, 장래에는 예외 없이 앞서 언급한 합병통제와 이행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통제권 취득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참가비율의 증가가 참가권 취득의 단계 사이나 혹은 그 아래에서 머물 때에도 합병통제 의무를 진다. 어느 주식회사에 지금까지 이미 25%까지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 주식비율을 예컨대 40%까지 증가시킨다면 이 기업은 주주총회의 참여율이 작을 때에는 실제로 통제와 결합되어 있고, 따라서 합병통제의무를 진다. 새로운 합병통제의무를 지는 사안은 공동통제에서 단독통제로의 주식변경이 있을 때이다. 유통가치가 25%나 50%에 도달하지 않거나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도 A가 60%, B가 40% 참가한 기업 C를 A가

3) 신고의무

형식상의 합병통제와 마찬가지로의 큰 의미를 갖는 개정은 합병통제의무를 지는 사례가 더이상 없을 것이나, 다만 사후에 신고하여야만 하는 사례이다. 신법 제37조의 합병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동법 제35조의 매출상한선을 넘긴 모든 합병은 연방카르텔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사후에만 행하여지는 합병통제는 더이상 발생할 수 없다. 합병통제가 이렇게 “강화”되었지만 통제되는 가치를 상향시킴으로써 완화되기도 하였다. 이 규정이 적용은 우선 참가기업의 매출액이 최소한 1조DM(구법에서는 5억DM)이어야 한다. 신법에서는 또한 신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합병조항”(소규모기업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2천만DM 이하의 매출액을 갖는 기업을 다른 기업이 매각하는 경우)에 따라서 기업의 취득이 2천만DM보다 적은 수익을 올릴 때에는 합병통제를 면제받는다. 이때의 매도인의 수익은 2천만DM의 매출상한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은 이러한 경우에 총체적으로 합병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합병통제법적으로는 더이상 아무런 규제가 없다. 통일규정은 이론적으로 소규모시장조항(시장이 형성된 후 5년이 지났거나 전체시장규모가 2천만DM 이하, 구법 제24조제3항제3호)에도 적용되는데, 이의 전체시장매

실무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규정은 합병통제절차를 신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구법 제24조제2항을 대신한 신법 제40조

출구모를 신법 제35조제2항제2문에서 3천만DM으로 상향하였다. 이 경우에는 어쨌든 대부분 합병 통제법적인 판단을 시장에서 형성된 “연계조항”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보호장치는 갖지도 못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단독적인 관여 때문에 거절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는 계속하여 필요하다.

4) 절차

실무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규정은 합병통제 절차를 신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구법 제24조제2항을 대신한 신법 제40조이다. 지금까지 합병은 오직 사후에 고시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구법 제24조제2항제2문 제1반문에서 카르텔청이 거부할 수 있는 기간내인 1년 기간이 적용되었다. 이에 반하여 합병의도가 - 임의적이건 혹은 구법 제24조제1항제2문의 “신고”기간의 이행이건 간에 - 신고되려면 이는 구법 제24조제2항제1문에 따라서 최대한 4개월간의 기간이 적용되었다. 만일 카르텔청의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1개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에게 합병감사가 시작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1개월 편지”(Monatsbrief)가 없었거나 실무에서 항상 뒤따르는 무형식의 “자유로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와 더불어 특히 제3자에게도 취소할 수 없다. 오로지 합병이 거절되었을 때만이 처분이 유효하다.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은 합병결의 “의도”의 검사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 합병통

제법상 검사되지 않거나 준기업적으로 더이상 신고되지 않고 다만 고시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례는 더이상 규율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앞으로 신분상의 신고절차인 검사기간이 적용되어야 할지 또는 구법의 1년 기간이 적용되어야 할지 혹은 전혀 기간과는 무관한지의 여부에 대해서이다. 신고사례와 관련하여 신법 제40조는 애당초 이와 관련없는 사례와 심각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사례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사가 무관한 사례는 1개월내에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조치는 신법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1개월 기간의 만료로 효과를 갖게 되나, 실무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거절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무형식의 통지로 충분하다. 카르텔청은 1개월의 기간 내에(새로이 얘기되고 있는 “主審査節次”(Hauptprüfverfahren)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4개월간의 심사권한도 갖게 된다. 이 통지는 - 지금까지는(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1개월 기간 편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 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처분도 행한 것이 아니다. 주심사절차는 (만일 신청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항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종료된다. 이 종료는 - 새로이 - 조건이나 부담과 결부될 수 있는 자유처분이거나 또는 거부처분이다. 자유처분은 참가기업에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능성은 오직 제3자 참가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밖에 실질적인 항변은 보통의 취소항변과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항변의 목적은 거

지난해의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개정은 법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유럽연합의 규정내용에 국내법을 동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 진보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처분일 수는 없고, 자유처분의 취소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법 제40조제1항은 법효과가 발생된 거절기간은 합병이 새로이 심사되어야 하는 기간 내의 기간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의 법적·법정책적인 문제는 카르텔청 자신이 카르텔청의 긍정적인 절차종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주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V. 그밖에 중요한 개정

1) 에너지공급에 대한 남용 감독

전기와 가스에 관한 구법 제103조와 제103a조는 1998년 4월 25일에 시행된 에너지 경제의 신규정에 관한 법률 제2장에 의하여 이미 삭제되었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공급기업에 관한 남용감독에 관한 특별규정-특히 엄격한 장치였던 구법 제103조제4항제2문제2호-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남용감독도 신법 제19조의 일반적인 시장지배남용 감독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밖에도 독점적으로 인용계약과 불할계약은 더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독점적인 인용계약은 또 제1조와 관련하여 인용제공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공급기업의 최소한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파악되는 한에서 불허의 결과가

있게 된다.

2) 벌금규정

완전히 새로 규정된 부분은 벌금규정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법률의 제3장 제2관은 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실질적인 벌금규정이 제81조에서 시작되고, 이에 연이어서 법 제82조에서 제86조까지는 그 절차규정이다. 위원회 초안에서 우선 예정하고 있었던 기업이익의 10분의 1까지였던 벌금의 최고한도는 이미 정부초안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러한 한에서 구법조항(즉 1백만DM까지)이 그대로 존속하였다는 점이고, 이 금액 이상은 범위반을 통하여 취득한 다수 취득액의 3배까지 벌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VI. 결론

지난해의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개정은 법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유럽연합의 규정내용에 국내법을 동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 진보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법개정 경과와 적용 후의 상황을 우리 나라의 작금의 법개정 경과와 대비하여 입법시 참조할 사항은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